

주제가 있는 통일문제 강좌 **11**

북한법을 보는 방법



北



韓



法

CONTENTS



I. 머리말

5

〈깊이 보기 ①〉 북한의 법에 대한 인식과 반법치주의적 사고

II. 북한헌법에 나타난 북한체제의 변화

9

1. 소군정과 북한의 법적 토대형성 ————— 10
2. 1948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과 권력구축 ————— 12
〈깊이 보기 ②〉 1948년 북한헌법에 반봉건적·반자본주의적
반사회주의적 요소가 혼합된 이유
3. 1972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과 권력집중 — 13
4. 1992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과 권력분리 — 15
5. 1998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과 권력분산 — 17

III. 북한법에 반영된 북한사회의 변화상

21

1. 북한에서의 법의 기능과 역할 변화 ————— 22
〈깊이 보기 ③〉 헌법우위사상에 근거한 법치주의
2. 북한의 법현실과 법치주의 ————— 25
〈깊이 보기 ④〉 마르크스-레닌주의에 대한 주체사상의 우월성과 법의
도구적 가치
〈깊이 보기 ⑤〉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
3. 북한법의 실체와 북한사회변화의 반영 ————— 29
〈깊이 보기 ⑥〉 북한법의 입법형식



IV. 북한법의 이질성 및 이중성과 올바른 법해석

35

- 1. 북한법의 이질성과 올바른 법해석 ————— 36
- 2. 북한법의 이중성과 올바른 법해석 ————— 40
- 3. 북한법을 잘 보는 방법 ————— 42

〈깊이 보기 ⑦〉 북한헌법에서의 입헌성과 법치주의 문제

V. 맺음말 : 북한법의 미래

47

<참고문헌>

51

<표·사진>

- < 표 ① > 북한헌법사 20
- < 사진 ① > 평양환영군중대회에서 연설하는 김일성 11
- < 사진 ② > 조선노동당 창건 60돌 중앙보고대회 모습(2005.10) 13
- < 사진 ③ > 조선노동당대회에서 정강을 발표하는 김일성 14
- < 사진 ④ > 주체사상탑 14
- < 사진 ⑤ > 회의장에 나란히 걸려있는 김일성·김정일의 초상화 16
- < 사진 ⑥ > 개성공단 북측근로자 견습 전경 18
- < 사진 ⑦ > 조선노동당 창건시 김일성의 집무실 23
- < 사진 ⑧ > 북한의 법전 27
- < 사진 ⑨ > 최고인민회의 모습 31
- < 사진 ⑩ > 신의주특구 공업단지 모형도 32
- < 사진 ⑪ > 금강산 '자연바위글밭' 37
- < 사진 ⑫ > 북한TV에 방영된 영변 핵시설 41

부동산 전문대학

부동산 전문대학

부동산 전문대학

부동산 전문대학

부동산 전문대학

부동산 전문대학

부동산 전문대학

I. 머리말





I

머리말

이 세상에 법 없이 움직이는 국가와 사회는 없으며, 한 나라의 법은 약간씩 상이한 양상을 띠다고 할지라도 그 사회의 현실과 가치관을 대체적으로 잘 반영하고 있다. 이에 북한사회를 가장 쉽고 폭넓게 이해하는 지름길은 북한의 '살아있는 법'을 연구하는 것일 수 있다.

북한의 법제도는 우리 사회와 유사한 경우도 있지만, 60년 분단역사에 버금가게 서로 다른 사회발전 속도에 따른 각종 사회제도와 법령의 차이는 매우 크다. 따라서 북한법을 주의깊게 살펴보면 북한사회의 변화양상과 남북한사회의 이질성을 제대로 분석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법은 우리 사회와는 달리 현실과의 괴리가 심하여 허구적이거나 이중적인 내용들이 많다.

대표적인 예로서 북한은 「환경보호법」에서 ‘반핵평화주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만 그간의 북한 핵정책을 감안할 때 이 규정은 정치적 선전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이는 북한법의 무규범성의 전형으로 자칫 ‘북한법의 분석’을 ‘북한법의 홍보’로 전락시킬 우려가 다분하기 때문에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우리사회의 법도 현실과 맞지 않아서 지킬 수 없고, 공정하지 못해서 지켜지지 않는 법들이 허다한데, 북한의 경우 법에 대한 인식에 반법치주의적 의식이 강하여 북한법에 북한의 현실이 있는 그대로 투영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



깊이 보기 ① 북한의 법에 대한 인식과 반법치주의적 사고

법사명론 : 법은 ‘하부구조의 물질적 토대가 반영된 상부규정성’에 불과하므로 공산사회로 진화하면서 법의 사명론적 기능성은 필연적임(Marx, 콜라코프스키).

정치중속론 : 법의 임무는 수령의 정치법률적 보위, 당의 노선과 정책의 관철, 사회주의 전취물의 수호에 있음(주체의 법이론).

제한적 법치론 : 법 준수는 근로인민대중의 자각적인 규율생활이며 국가적인 조직 생활이자 수령의 교시임(김정일).

바로 이런 점에서 ‘북한법을 보는 방법’을 제대로 알아야만 북한사회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무엇보다 북한사회가 우리와 다르듯이 북한법과 제도 그리고 법률용어의 차이점 및 이질성에 대한 인식과 지식이 필요하다. 또한 북한법에 산재해 있는 현실과 법규범간의 이중성과 허구성을 밝혀내는 분석능력도 요구된다.

요즈음 북한헌법과 법에는 북한사회의 변화상을 적지 않게 반영하고 있어서 북한을 정확히 알고자하는 욕구를 어느정도 충족하고 있다.

이에 제대로 된 북한법 연구는 북한사회의 올바른 이해는 물론 나아가 통일시대에 대비한 남북한 사회통합방안 구상에 있어서도 매우 유용하기에 ‘북한법을 보는 방법’에 대한 지적 관심이 커지길 기대한다.

북한인권리포트
2012년

북한인권리포트
2013년

북한인권리포트
2014년

북한인권리포트
2015년

북한인권리포트
2016년

북한인권리포트
2017년

북한인권리포트
2018년

II. 북한헌법에 나타난 북한체제의 변화



II

북한헌법에 나타난 북한체제의 변화

1. 소군정과 북한의 법적 토대형성

소군정 기간 동안 북한지역의 법적 토대 형성은 크게 사회주의국가의 건설과 김일성 중심의 권력구조 구축이라는 두 갈래로 나뉘어지고 있었다. 사회주의국가의 건설은 포고 제1호 ‘치쓰짜꼬프대장의 포고문’, 포고 제2호 ‘북조선에 시행할 법령에 관한 건’, ‘20개조 정강’ 등으로 그 기초와 골격을 형성하고, 김일성 중심의 권력구조 구축은 통일적인 중앙주권기관의 수립을 역설하면서 구성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두 갈래의 시도는 1946년 ‘조선로동당’의 강령 및 규약이 채택되고, ‘조선인민군’의 창설(1948. 2)과 함께 ‘조선민주

주의인민공화국'이 정식으로 수립·공포(1948. 9. 9)됨으로써 마무리 되었다.

소군정 기간 동안 북한의 입법은 향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적 토대를 형성할 주요한 것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형식에 있어서 소군정의 포고문형식 보다는 '인민위원회'의 형태를 빌어 마치 이 시기에 외형상 군정이 아닌 민정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시기는 소련이라는 외국군의 주둔이 명확하고 군정 포고문의 효력이 우월적 지위에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해방 전 북한지역의 소군정 시기는 민정이라는 외형적인 명분과 공산세력 중 소련추종세력이 권력기반을 확고히 다지는 과정으로 규정 지을 수 있다.



〈사진①〉 평양환영군중대회에서 연설하는 김일성(1945. 10.14)

2. 1948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과 권력구축

한반도에 신탁통치를 실시한다는 모스크바 3상회의(1945. 12. 28, 미·영·소 3국 외상회의) 이후 견해 차이에 따라 신탁통치가 불가능해지자 북한에서는 1947년 11월부터 독자적으로 헌법 제정을 시도하였다.

조선공산당파와 김일성의 갑산파는 당시 조선의 정치사회적 현실에 있어서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사회주의혁명보다 친일파와 같은 민족반역자들을 숙청하고 봉건제도의 유습을 청산하는 것을 우선적 과업으로 보았다.

1948년의 북한헌법은 대체적으로 조선공산당파와 김일성의 갑산파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초기형태의 사회주의 발전단계



깊이 보기 ② 1948년 북한헌법에 반봉건적·반자본주의적 반사회주의적 요소가 혼합된 이유

1948년의 북한헌법은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의 인정과 토지·중소상공업의 소유 및 상속을 허용하는 사회주의적 발전단계 중 초기형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으며, 사회주의헌법으로 향하는 과도기적 헌법에 해당한다.

1948년 북한헌법은 이러한 사회주의 발전단계론적 특성 외에도 정치현실에 있어 맥을 같이 하는 정치적 헤게모니의 다름이 있었다.

그 당시에 소련파는 부르조아가 다시 등장할 여지를 사전에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에, 조선공산당파와 김일성의 갑산파는 “소련의 경우는 부르조아를 청산하는 사회주의혁명의 단계에 있지만 조선의 현실은 친일파와 같은 민족반역자들을 숙청하고 봉건제도의 유습을 청산하여 진정한 민주주의제도를 먼저 정착시켜야 할 단계”라고 주장하여 사적 소유제도 폐지에 크게 집착하지 않았다.



〈사진②〉 조선노동당 창건 60돌 중앙보고대회 모습(2005. 10)

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특징과 더불어 반(反)봉건적·반(反)자본주의적·반(反)사회주의적 요소가 혼합된 헌법이 되었다.

북한의 제헌헌법에 해당하는 1948년 헌법은 5차례의 헌법개정을 하지만, 그 내용은 주로 우리나라의 선거법에 해당되는 ‘면’ 행정단위 폐지,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임기조정, 선거 및 피선거 연령 인하조정, 선거구 인구기준 변경 등에 불과하였다.

3. 1972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과 권력집중

1972년의 북한헌법은 북한정권의 수립으로부터 제6차 개정에 해당되지만, 이 헌법의 성격상 새로운 헌법의 제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 이유는 헌법의 명칭에서 볼 수 있듯이 1948년의 북한헌법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헌

법'이라고 하던 것을 이 헌법부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으로 바뀌었으며, 내용상으로도 기본이념과 권력구조(국가성격·혁명 목표·경제체제·주식제 신설 등) 등에서 본질적인 변화를 가지고 왔기 때문이다.



〈사진③④〉 조선노동당대회에서 정강을 발표하는 김일성(좌)과 주체사상탑(우)

1972년의 북한헌법의 제정동기는 그들 나름대로 사회주의를 발전시키면서 사회주의 발전의 초기형태인 인민민주주의 원리가 더 이상 맞지 않게 되었고, 그 가운데 중국과 소련사이의 이념분쟁과 '주체사상'의 등장이라는 이념적 변화를 겪었으며, 당과 국가기관에 관한 규정, 즉 권력구조부문의 실질적 변화에 대한 필요성 때문에 1948년의 북한헌법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된 것 등에 그 원인이 있다.

이러한 1972년의 북한헌법의 주요 특징으로는 노동당에의

초헌법적 지위부여의 명시화·사회주의적 소유제도의 확립·주체사상의 헌법규범화·국가주석제의 도입·집단주의원칙의 강조·남북통일문제의 직접적 언급 등을 예시할 수 있다.

특히 권력구조의 측면에서는 공산당(노동당) 1당독재체제와 김일성 우상화체제의 확립을 통한 ‘김일성 1인독재체제’의 제도적 강화를 더욱 공고히 한 헌법이라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4. 1992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과 권력분리

1992년 북한헌법 개정의 주된 배경으로는 먼저 동구 사회주의국가의 몰락에 따라 사회주의가 현실세계에서 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사회주의국가인 소련·중국 등과의 유대가 약해지는 국제정세 속에서 북한 내부의 동요를 막고 체제유지를 위한 대내외적 대응이 불가피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와 ‘사회주의 건설의 역사적 교훈과 우리 당의 총노선’이라는 담화에서 사회주의권 변화를 ‘일시적 사회주의의 좌절’로 규정하고 이러한 역사적 교훈에 비추어 ‘우리식 사회주의를 고수한다’는 사상과 이론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1992년 헌법개정의 주요 배경을 이룬다.

그 다음으로, 북한은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탈피하고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대외정책의 이념과 원칙을 수정하고, 대외경제개방정책의 추진을 위한 법적인 토대를 마련하여야만 하였다. 말하자면 북한의 당시 입장으로서는 보다 확실한 국제적 고립의 탈피와 경제회복이란 현안 타개를 위해 헌법규정을 개정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진⑤〉 회의장에 나란히 걸려있는 김일성·김정일의 초상화

끝으로 북한은 김정일체로의 후계권력체제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여 권력의 승계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주석’ 위주로 집중되어 있는 권력구조를 개편하여 권력구조를 부분적으로 다원화함으로써 향후 제기될 권력구조의 전개방향과 관련하여 다양한 가능성에 대비하고자 하였다.

바로 이런 점에서 볼 때, 통치이데올로기인 주체사상에서의 수령론은 북한에서 수령의 유일지배체제를 정당화할 뿐만 아니라 ‘사회정치적 생명체론’과 연계되어 ‘혈연론’으로 발전되면서 김정일 후계체제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지도지침으로 확산되었다. 1972년의 김일성 주석 1인중심의 주체헌법은 엄연히 존재하던 김정일 중심의 후계자리를 담을 여지가 전혀 없었다.

요컨대 1992년 북한헌법상 권력구조는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라는 두 개의 권력중심기관을 동시에 갖고 있는 세계 초유의 기형적인 헌법이면서, 1972년 주체헌법의 폐쇄성과 시대착오적인 헌법이념을 극복하려는 헌법개정이었다.

5. 1998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과 권력분산

1998년에 개정된 현행 북한헌법은 통치구조에 있어서 ‘국가수반’ 없이 김정일 위원장이 당 총비서 및 국방위원회 위원장직을 겸직하고, 경제문제는 내각에, 대외관계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위임하여 김정일 위원장은 당·군을 장악하고 경제와 대외문제는 내각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각각 책임을 지게 하는 권력분산 통치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내각총리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권한강화를 통해 기존의 주석에 집중되어 있던 권한을 분산하고, 헌법상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초헌법적으로 국방위원장에게 권력을 집중시키는 ‘권력의 집중과 분산’을 적절히 조정하였다.

현행 북한헌법은 무엇보다 경제난 타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즉 경제관련 부서의 통폐합, 지방행정조직의 일원화, 경제관련 헌법조항의 수정 등을 통해 조직운용 및 경제효율성 제고를 모색하고 있는데 사적 소유 확대, 상속권 인정, 경제관리의 독립채산제, 거주·여행의 자유인정 등은 북한체제의 큰 변화를 시사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사진⑥〉 개성공단 북측근로자 견습 전경

요컨대 북한의 현행헌법은 김일성 주석 사후 비정상적인 국가운영체제를 벗어나 김정일체제의 공식적인 출범을 계기로 정치체제의 수호와 경제회생이라는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규

정의 법적 토대를 형성하는 기본규범이라 할 수 있다.

즉 이 헌법은 권력구조 개편부분과 경제정책변화에 치중하였지만, 기본적 인권에 해당되는 공민권부분에서는 노동당의 권력독점주의, 권력집중주의, 사회주의적 다당제, 민주주의 중앙집중제 등 인민주권을 바탕으로 하는 사회주의헌법의 원칙은 여전하다.

또한 신설된 서문에서는 김일성을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추대하는 것을 명시하여 유훈통치의 공간을 마련해 두고 있다.

〈표 ①〉 북한헌법사

구분	주요 내용	비고
1948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헌법 (1948. 9. 9)	-10장 104조, 수도-서울, 한반도 전체 지배 -제1차 개헌(1954. 4.23) : 면 폐지 ; 내각구성 조항 -제2차 개헌(1954.10.30) : 지방정권기관에 각급 인민회의 (의결기관),각급 인민위원회 (집행기관)설치 ;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의 임기를 3년에서 4년으로 조정 -제3차 개헌(1955. 3. 11) : 각급 지방정권기관 등의 권한변경 -제4차 개헌(1956. 11. 7) :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만 20세에서 만 18세로 변경 -제5차 개헌(1962.10.18) : 대의원 선출 인구기준을 5만명에서 3만명마다 1명으로 변경	반(反)봉건적·반자본주의적·반사회주의적 요소가 혼합된 헌법
1972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1972.10.28)	-11장 149조 수도-평양, 북반부 현실화 -노동당에의 초헌법적 지위부여의 명시화 : 김일성 1인 독재체제 -사회주의적 소유제도의 확립 -주체사상의 헌법규범화-청산리, 천리마운동 명시 -국가주석제의 도입 : 최고인민회의의 소환 불가능 -집단주의 원칙의 강조 -남북통일문제의 직접적 언급 -선거연령 만 17세 이상 -반(反)종교선전의 자유 → 종교말살 정책	사회주의 헌법 제정
1992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1992. 4. 9)	-7장 171조, 국제활동, 대외경제체제 -권력구조를 부분적으로 다원화함 -김정일 후계권력체제 헌법화 -근로인민에서 '병사' 삭제 -최고인민회의 : 의사정족수 1/2 → 2/3 -주석 권한 축소 : 소환가능 / 국가수반·대표에서 주권 대표/조약의 비준·폐기권 → 조약의 비준 또는 폐기의 공포권 -국방위원장 : 군 지휘·통솔권 -혁명성산 : 백두산 - 양김의 적통의식, 쌍두마차	양김 공동 정권 헌법
1998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1998. 9. 5)	-7장 166조 서문 신설 : 김일성 유훈 통치수단 활용 -사적소유 확대, 상속권 인정 -경제관리의 독립채산제 -거주·여행의 자유 -최고인민회의 / 주석 / 국방위원회 / 중앙인민위원회/ 정무원 / 지방인민회의와 인민위원회 / 지방행정 경제위원회 / 검찰소와 재판소→최고인민회의 / 국방위원회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 / 지방인민회의 / 지방인민위원회 / 검찰소와 재판소	반(反)자본주의 요소 부활

북한법률연구회

북한법률연구회

북한법률연구회

북한법률연구회

북한법률연구회

북한법률연구회

북한법률연구회

Ⅲ. 북한법에 반영된 북한사회의 변화상



III [북한법에 반영된 북한사회의 변화상]

1. 북한에서의 법의 기능과 역할 변화

최 근 북한사회의 가장 큰 변화 가운데 하나는 법의 기능과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에서 법제사업의 성과로 사회관계의 변화발전에 따라 새로운 법이 제정되고 개정되어야 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과거 북한법의 변화과정을 살펴보면 법을 대외과시용으로 보거나 한낱 정치의 표현형식이자, 실현수단이라고 하여 법을 정치에 종속 내지 복종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특히 ‘주체의 법이론’에서는 법의 보편성을 부정하고 북한

의 시각으로만 보는 경향이 강하였다. 이 당시의 법들은 대부분 김일성 개인의 권력수호의 무기로 작동되어 법의 기능이 그 본질과 보편성에서 벗어난 만큼 법의 대외적인 공표를 금지한 경우가 허다하였다.

이러한 ‘주체의 법이론’의 폐쇄성은 주체사상의 수령론이 김정일후계체제의 정당성 확보로까지 외연을 확장하는 과정과 대외경제개방정책의 수용과정에서 완화되어, 인민대중에게 법현실의 담당자로서의 지위가 부여되기 시작하였다.



〈사진⑦〉 조선노동당 창건시 김일성의 집무실

조선노동당의 당헌·당규의 개정과 보완작업이 정지되고 각종 법령의 제정과 수정·보충, 개정이 활발해진 데서도 그 징후는 뚜렷이 확인할 수 있다. 과거 노동당의 규약으로 정하던 것들을 법에 정하여 법치에 의존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요즘 북한은 사회주의 법제사업을 “사회주의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제도적으로 고착시키고 공고화하며 보호하기 위한 사람들의 행위규범, 활동준칙을 제정하는 활동”이라 규정하고 있다.

북한의 사회주의 법제사업의 주요 내용은 새로운 법을 만들고 변하는 조건과 현실에 맞게 법을 수정·보충, 개정 또는 제정하는 것으로 법치주의 진입으로의 초기형태와 조건을 갖춰가는 듯하다.



깊이 보기 ③ 헌법우위사상에 근거한 법치주의

헌법 우위사상에 근거한 법치주의란 법을 수단으로 하는 통치가 아니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에 의한 통치를 통하여 권력담당자의 자의적 권력행사를 막고, 국가생활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사회에서는 1987년 6·10 민주항쟁으로 인하여 국가권력의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되기 시작하였고, 이렇게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된 국가권력은 다시 헌법규범에 의하여 통제되는 '헌법의 생활화'가 확립되었다.

그러나 북한의 김정일체제는 경제발전과 사회개방을 체제 수호를 위한 전제로 제한하려는 기본구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사회 변화양상에 대한 법의 기능과 역할이 미미할 수밖에 없고 법치주의 정착가능성을 진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더욱이 최근 북한에서 나타나고 있는 법제사업의 활성화와 법치주의의 초기단계 현상은 우리사회의 헌법우위사상에 근거한 법치주의와는 전혀 상이하다고 할 수 있다.

2. 북한의 법현실과 법치주의

북한에서의 법치주의는 우리사회의 법치주의, 즉 국가권력의 통제와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헌법이념에 근거한 실질적 법치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당초 북한은 법치주의가 존재할 수 없었다. 마르크스-레닌주의 법이론에서 법은 공산사회로 전환하면서 사멸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에 법의 기능과 역할에 주목하지 않았다.

그러나 마르크스-레닌주의에 대한 주체사상의 우월성을 과시하는 북한은 현재의 사회발전단계에서 법의 존재가치를 인정하면서 법의 임무를 ‘수령의 정치법률적 보위’, ‘당의 노선과 정책의 관철’, ‘사회주의 전취물의 수호’ 등에 국한하여 언급하였다.

즉 법의 집행이 바로 수령의 사상과 당의 정책을 실현하는 것으로 보았던 것이다. 이는 법의 사멸론 내지 무용론이 법의 기능적 필요성에 의해서 대체된 것이지만, 법의 지나친 도구성, 즉 정치에의 종속 내지 복종형태는 법에 의한 지배라는 법치주의의 이념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최근 북한은 법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하였고 북한사회가 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초기단계로 들어서고 있다. 이는 어떤 면에서 본다면, 북한사회에서 법이 중요한 행위규범과 활동준칙으로 강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1992년의 북한헌법은 “국가는 사회주의 법률제도를 완비하고 사회주의 법무생활을 강화한다”는 조항(제8조)을 추가 신설함으로써 법을 당의 지침과 수령의 교시 외에 별도의 사회운영시스템으로 인정한 것이다.



깊이 보기 ④ 마르크스-레닌주의에 대한 주체사상의 우월성과 법의 도구적 가치

북한은 1970년대에 주체사상을 공식적으로 제기한 이래 줄곧 마르크스-레닌주의에 대한 우월성과 독창성을 강조하였다. 마르크스-레닌주의가 노동계급이 역사의 주인이 아니었던 시대를 반영한 사상이라면, 주체사상은 노동계급이 역사의 주인인 시대의 세계관이기 때문에 훨씬 진화되고 우월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마르크스-레닌주의의 국가사멸론과 법사멸론도 국가와 법에 대한 도구적 가치를 주목하지 못한 비과학적이고 비현실적인 논리라는 것이다.

이에 주체의 법이론에서는 법의 도구화와 정치예속현상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 된다.

북한에서의 법치주의는 소위 ‘사회주의 준법성’과 ‘사회주의 법무생활’의 강화로 규정할 수 있다. ‘사회주의 준법성’은 모든 국가기관·기업소·단체·공민의 무조건적 준법을 국가가 요구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사회주의 준법성’은 법규범

력과 집행의 담보원칙으로서 법의 준수집행에서 예외 및 특권의 불허, 국가법규에 대한 사소한 위반도 허용하지 않는 엄격성, 전국적 범위에서 유일적 적용집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 준법성’은 북한에서 사회주의적 생활규범과 행동원칙을 철저히 하여 궁극적으로 당과 체제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국민의 기본권과 공공복리 및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우리사회의 실질적 법치주의와는 상당히 동떨어진 개념이다.



〈사진⑥〉 북한의 법전

‘사회주의 준법성’과 함께 북한식 법치주의의 중요한 또 하나의 축인 ‘사회주의 법무생활’이란 “사회주의사회에 사는 모든 사회성원들이 법규범과 규정을 철저히 지키고 법의 요

구대로 활동하는 사회생활”이라고 정의내리고 있지만 국가·경제기관의 권력남용을 통제하는 것을 주요 임무로 삼았다.

이를 위하여 ‘사회주의법무생활제도위원회’를 설치하여 지도간부의 관료주의와 부패 및 권력남용을 방지하는데 주력하고 혁명적 준법기풍 수립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이 당초 사회주의 법무생활은 국가기관의 지도적 간부의 법준수에 중점을 두었으나 이제는 “국가의 법질서에 따르는 근로인민대중의 자각적인 규율생활과 공동생활을 실현해야 할 국가적인 조직활동”으로 규범적 차원의 보편적 개념으로 확대하고 있다.

북한법제의 60년의 변화과정은 비록 매우 느린 속도이기는 하지만 법사멸론→정치중속론→제한적 법치론 등으로 법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아직은 북한사회에서 ‘법의 지배’가 형식적 법치주의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지만 최근들어 정상적인 사회운영 시스템으로서 법이 작동되면서 법치주의의 실질적 의미가 부각되고 있다.

이에 북한법에 북한사회의 변화상이 많은 부문 반영되고 있으며, 북한체제의 구체적인 목표가 가시화되어 있어서 북한법은 점점 북한을 알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되고 있다.



깊이 보기 ⑤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

독일의 오토마이어(O.Mayer)나 칼 슈미트(C. Schmitt)의 법치국가론은 법의 내용이나 목적을 문제로 삼지 않는 형식적 법치주의였으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형식적 법치주의는 자취를 감추고 실질적 법치주의가 등장하게 되었다.

실질적 법치주의는 법적 안정성의 유지와 더불어 인간의 존엄성 존중이라든가 실질적 평등과 같은 정의의 실현을 내용으로 하는 법에 의한 통치원리를 뜻한다.

'합법성'의 근거가 되는 '법률(lex)'과 '정당성'의 근거가 되는 '법(jus)'을 조화하는 것이 오늘날 법치주의의 핵심과제이다.

3. 북한법의 실체와 북한사회변화의 반영

북한법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있어 북한의 헌법개정에 따른 입법동향을 살펴보면 시기별로 북한법의 대체적인 특징을 알 수 있다. 북한법의 체계는 헌정관계분야, 행정관계분야, 민사 및 형사관계분야, 경제 및 사회관계분야로 나눌 수 있고 최근의 북한법령의 경우는 개성공업지구·금강산관광지구 등 경제특구법을 포함한 대외경제 분야를 추가하여야 할 것이다.

북한법 체계는 우리와 유사하게 분류할 수 있지만, 입법형식은 우리와 많이 다르다. 북한법은 정형화되고 단계적인 우리 법과 달리 입법의 형식과 과정 및 절차에 있어서 엄격하지 않은 경향이 있어 형식적 입법보다는 실질적 입법에 주목하

지 않으면 중요한 법규를 간과할 수 있다. 여기에다 당 규약이 헌법보다 우선하는 데서 오는 혼돈은 북한법 보기를 더욱 어렵게 한다.



깊이 보기 ⑥ 북한법의 입법형식

현행 북한 헌법상 북한법제의 단계구조는 ①헌법 ②부문법 ③최고인민회의 법령·결정, 국방위원회 결정·명령,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결정·지시 ④내각 규정, 내각의 결정·지시, 내각위원회·성의 지시, 지방인민회의의 결정, 지방인민위원회의의 결정·지시 등으로 형성되어 있지만 노동당의 입법과정 참여가 매우 실질적이다.

그리고 법의 개정을 일반적인 수정보충과 개정으로 구분하여 '수정보충'은 법문구의 삭제·변경·첨부인 경우로 법규범의 수정보충사업이라 하고, '개정'은 해당법의 전반적인 구성체계의 변경을 말한다.

그러나 북한법의 체계나 입법기술이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정형화되고 입법형식이 표준화되면서 북한법의 입법형식의 특수성은 많이 해소되고 있다.

북한법 제도에 결여된 보편성을 보완하고자 하는 노력은 외국변호사의 북한변호사 자격인정에서도 엿볼 수 있고, 대외 개방정책의 입법화 과정에서 북한 국내법의 입법체계가 표준화되는 점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형사관계법에서 두드러지는데 북한 형법상 반국가범죄의 처벌을 완화하고 생활질서침해법을 중벌한다든가, 형사소송법상 증거재판주의·자백의 증거능력 제한·체포시 48시간내 가족 내지 소

속단체에의 고지 등은 개인인권의 법제화로 볼 수 있다.

민사관련분야의 많은 입법 정비과정에 있어서도 변화가 나타나는데, 생산수단의 소유주체를 국가와 협동단체 이외에 사회단체를 추가함으로써 경제활동 주체의 다양화를 시도하고 사회단체소유권을 신설하여 제한적 자본주의의 법적 수용을 시도하는 것 등이 대표적 예라 하겠다.



〈사진⑨〉 최고인민회의의 모습

그러나 대외경제개방추진과 체제개혁 불허라는 이질적인 과제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는 북한체제의 고민은 북한법 전반에 걸쳐 표출되는데, 체제변화에 대한 불안감이 그것이다.

예를 들어 소유형태를 국가소유권, 사회·협동단체 소유권, 개인소유권으로 다양화 하였지만 개인소유권이 소비재의 소유에 국한되어 있고 중국과 같은 사영기업자와 사영경제, 그리고 그에 따른 사인소유권을 인정하는데까지는 이르지 못

하고 매우 제한적이고 불안한 경제활동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관련법에 있어서도 개방적인 경제발전을 목표로 하면서도 인간의 개성과 창의성을 필요로 하는 시장경제에 맞는 인적자원교육과 교양을 제한하고 있다.

대외경제개방정책과는 정반대로 북한체제 수호를 위한 보수적 교육을 강화하고 있는 대목에서 우리는 북한의 걱정거리를 알게 된다.

반면에 남북교역 및 대외교역 활성화를 겨냥한 가공무역법과 기타 여러가지의 대외경제관련법은 매우 파격적이고 적극적 입법형태를 띄고 있다.



〈사진10〉 신의주특구 공업단지 모형도

특히 북한의 경제특구법제는 외국인과 국제적 신뢰획득은 물론이지만 남한과의 경제관계를 특별히 고려한 매우 체계적인 입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경제특구법제는 북한 국내법적

성격을 가지면서도 그 적용은 주로 남한 기업과 남한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셈이다.

이렇듯 북한법을 일별하면 북한사회가 대외개방과 남북경협에 대해서는 적극적이면서도, 시장경제의 도입과 교육·교양에 있어서는 매우 소극적임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과거에는 북한 스스로 자국법의 비정상성을 인정하여 공표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법령공개는 물론 영역본까지 발간하고 있는 만큼 북한법과 관련한 정보접촉이나 자료수집은 이전보다 훨씬 수월하고 간단하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북한법의 실체는 북한사회의 반영이기에 북한법을 본다는 것은 북한사회를 보는 것이고 분야별 남북통합안 구상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북한법규를 보는 방법

북한법규를 보는 방법

북한법규를 보는 방법

북한법규를 보는 방법

북한법규를 보는 방법

북한법규를 보는 방법

북한법규를 보는 방법

IV. 북한법의 이질성 및 이중성과 올바른 법해석



IV

북한법의 이질성 및 이종성과 올바른 법해석

1. 북한법의 이질성과 올바른 법해석

북한법의 연구와 해석에 있어서는 남북한의 사회적 이질성에 주목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웰빙시대를 맞고 있는 우리와 달리 북한사회에서는 아직까지도 '살'을 '미'의 표징으로 보며, 30대 중반의 통통한 몸매를 세련미의 한 조건으로 간주하고 여성몸매의 이상형으로 '160cm, 57kg'을 상정한 적이 있었다.

그리고 북한의 역사유적·유물·명승지 등의 보호관련 규정을 보면 금강산·묘향산 등 명산에 새겨져 있는 김일성-김정일 찬양문구를 '자연바위글밭'로 기념비적 서예의 한 구성분

야로 공식화하고 있다. 우리사회에서 이를 자연환경훼손 불법행위로 낙인하고 있는 것과는 너무도 대조적이다.



〈사진⑩〉 금강산 ‘자연바위글밭’

이는 남북한의 서로 다른 풍속도의 단면을 소개한 것에 불과하지만 남북한 사회구조의 이질성은 정치·사회·문화와 각종 제도에 있어 많은 차별성을 드러내고 있으며 그것이 법에 반영된다. 그 차별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없이 단순비교할 경우 각종 제도의 사회적 의미를 간과할 수 있다.

남북한체제의 이질성 중 으뜸은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구조에 대한 인식과 대표선출 개념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우리 정부 통일정책의 ‘남북연합’ 구상을 살펴보면 『남북평의회』를 남·북한의 의회대표 50인씩 100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우리 헌법상의 국민주권과 북한의 인민주권을 동일선상에 놓고 상정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국민주권에서 국민은 ‘대표’를 선출하고, 인민주권에서의 인민은 자신의 ‘대리’를 선출할 뿐이다. ‘대표’는 당선 이후 임기 동안의 행적에 따라 일정기간 후 정치적 심판을 받지만, ‘대리’는 임기 중에도 언제든지 소환당할 수 있고 ‘대리’들이 모여 만든 법도 거부당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 대표인 우리의 국회의원과 인민의 대리인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동일시 해서는 안되고, 북한과 통일정책이나 통일헌법전을 협의할 때도 북한 인민의 ‘대리’가 아닌 대표성을 담보받는데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북한의 사법제도분야에 있어도 남북한간의 이질성은 크다. 북한의 민사소송체계에 있어서 특이한 사항은 검사가 민사재판 진행에 직접적으로 참여한다는 점인데, 우리의 민사소송법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제도이다. 또 우리의 민사재판에 있어 변호사의 역할은 소송당사자의 철저한 동반자로서 인식되나 북한의 경우에는 공화국 변호사를 ‘개인영리업자’로 보지 않고 변호사의 활동을 변호사회의 이름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제도적 특수성을 간과하게 되면, 북한법제의 해독은 거의 불가능해진다.

그리고 남북한간의 각종 제도의 사회적 차별성 이외에 언어적 이질성으로 인한 법률용어의 차이점 극복도 북한법의 올바른 해석에 중요한 관건이 된다. 북한언어정책의 목적은 언

어를 사고(思考)의 도구로 인식하는 언어도구관의 관점에서 전체주의·집단주의·주체사상·개인우상화 및 권력에의 복종 등을 강화하는 언어와 문장을 규범화함으로써 사회통제적 효과를 거두는데 있다고 단정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남북한간의 어휘의미의 분화가 남북한 법률용어에 적극 반영되어 있어 북한법 해석에 또 하나의 어려움을 준다. 법률용어나 법령문은 법규범을 함축하거나 문장화한 것이므로 문학작품이나 학술서 등에 비추어 그 의미나 문장구조에 있어서 논리성·추상성·간결성·명확성·유형성 등 많은 특색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북한 법률용어의 경우 이와는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북한의 단선적인 언어정책의 전개는 남북한법률용어의 이질성을 심화시켰으며, ‘알곡증산(식량증산)’, ‘빌리기계약(임대차계약)’, ‘새끼회사(자회사)’, ‘늘고있는 돈(유휴자금)’, ‘부림집승(가축)’, ‘산원(산부인과)’ 등이 그 단적인 예이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그동안 보여왔던 북한의 인위적인 언어도구정책은 한계를 드러내게 되었고, 북한의 언어사용도 세계적인 공통어사용의 조류에 조금씩 편입되면서 부분적인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서 ‘얼음보송이’가 ‘아이스크림’으로 바뀌

고, ‘불산’이 ‘화산’으로, ‘해논 옷’이 ‘기성복’으로, ‘떼섬’이 ‘군도’로, ‘돌이판’이 ‘로타리’ 등으로 환원된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이와같은 변화양상은 북한의 입법형태에도 거의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는데, ‘프롤레타리아 독재’, ‘위대한 수령 동지’ 등의 용어가 입법목적이나 기본원리 부문에서 자주 반복되지 않거나 사라지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렇듯 북한법을 볼 때 해당분야의 제도적 특수성과 남북한 간의 사회적 이질성을 비교분석해 내고 법률용어 및 어휘의 미까지 파악할 수 있다면 북한법의 실체규명과 법해석은 거의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 북한법의 이중성과 올바른 법해석

우리사회에도 현실에 맞지 않는 법이 적지 않아 이해당사자의 법을 지키려는 법의식과는 상관없이 지켜지기 힘든 법들이 많다. 이는 사회현실과 법규범간의 괴리가 커져 법조문이 사문화되는 현상중 하나이다.

북한은 우리사회에 비해 법치주의와 법의식의 수준이 현저히 낮아 현실과 동떨어진 이중적이고 허구적인 법령 등이 훨씬 많다.

대표적인 예로 북한은 1986년부터 「환경보호법」에서 ‘반핵 평화주의’를 상세히 규정 (제7조 “핵무기, 화학무기의 개발과 시험사용을 금지하고 환경의 파괴를 막는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관된 정책이다. 국가는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핵무기, 화학무기의 개발과 시험, 사용으로 환경이 파괴되는 것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한다”) 하고 있는데, 1993년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로 시작된 북한의 핵정책을 감안할 때 이 조항은 단순한 선언적 규정을 일탈한 정치적 선전규정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북한법의 무규범성은 자칫 ‘북한법의 분석’을 ‘북한법의 홍보’로 전락시킬 우려가 다분하기 때문에 많은 경계가 필요하다.



〈사진 12〉 북한TV에 방영된 영변 핵시설

1992년의 북한 선거법의 경우도 복수입후보제와 경쟁선거를 보장하였으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996년 6월 민민전의 방송을 통해 “옛 소련을 비롯한 동유럽 여러 나라에서는

현대 사회민주주의자들이 주권기관(의회)선거에서 복수입후보제를 도입함으로써 사회주의정권을 반동에게 빼앗기고 말았다”고 주장함으로써 북한 선거법의 이중성과 허구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바 있다.

북한법에 있어서의 이중성과 허구성은 법의 후진성 이외에 법을 북한체제의 대내외 전시효과 용도로 사용하려는 데서 비롯된다.

따라서 북한법의 올바른 해석을 위해서는 해당 법 분야의 입법목적과 내용 외에 해당 법과 법현실간의 괴리현상을 동시에 살펴보는 세심한 배려가 요청된다.

3. 북한법을 잘 보는 방법

북한법 해석에 있어서 북한법의 이질성과 이중성 문제를 해결하였다 해도 북한법을 잘 보려면 유의할 사항이 더 있다.

북한헌법의 제11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영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라고 규정하여 노동당의 초헌법적 지위와 당규약 및 교시의 최고 규범성이 헌법적으로 보장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은 북한헌법에서 기본권 보장, 권력분립, 법치주의

등을 최소한의 구성요소로 하는 입헌성을 희박하게 하는 가장 대표적인 규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이 조항은 헌법과 법에 의한 지배, 즉 법치주의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깊이 보기 ⑦ 북한헌법에서의 입헌성과 법치주의 문제

입헌주의를 자유민주주의 내지 입헌민주주의(constitutional democracy)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할 경우, 이는 서구중심적인 개념규정으로써 입헌주의를 매우 한정적으로 정의내리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에 의한 통치는 오늘날 이미 보편화되었고 사회주의국가군인 북한·중국·베트남 등이 사회주의권의 붕괴과정에서 기본권 보장과 권력구조에 대한 헌법의 개정과 수정을 통하여 새로운 국면에 적응하려는 시도에서도 보듯이 입헌주의를 굳이 서구중심적인 개념으로 한정하거나 좁게 해석하려는 태도는 지양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입헌주의를 “정치체제의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주권 내지 인민주권의 실 현장치로서 국가구성원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권력분립이 확립된 헌법과 법에 의하여 통치하는 것을 요구하는 원리”라고 보는 것이 보다 합당할 것이다.

이와 같이 기본권보장·권력분립·법치주의 등 세가지를 입헌주의의 최소한의 구성요소로 볼 경우, 입헌주의는 보다 넓게 해석되고 그동안 서구중심적이고 자유민주주의체제에 한하여 인정되던 헌법상의 입헌성이 사회주의국가권의 헌법에서도 논의가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논리구성의 목적은 북한에서 헌법과 법의 역할을 폭넓게 이해하려는 시도인데, 북한헌법 제11조의 조선노동당의 초헌법적 지위와 당 규약 및 교사의 최고규범성 인정은 북한에서 법치주의문제를 실체없는 담론에 그치게 할 우려가 있다.

그런가 하면 노동당 규약의 법규범력은 실정법 해석에 많은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과거 북한의 민사소송법에서 “제2심 재판에서는 상소, 항의자료와 사건기록에 근거하여 제1심 재판의 판결, 판정이 법의 요구에 맞으며 과학적인 증거에 기초하였는가를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잘못된 것은 바로 잡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북한의 김일성대학 발간 『민사소송법』은 「수령의 교시·지도자동지의 말씀·당의 방침」을 제2심 재판의 기준으로 그 최고법규성을 인정하여 법과 증거를 오히려 그 하위에 두고 있는데, 이러한 식의 법규해석이 지속되는 한 북한법의 규범력 유지와 법치주의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북한법 해석에 있어서, 해당법 분야의 규범력 외에 다른 곳에서 법규범력이 발생할 수 있는지 헌법·노동당 규약·당 총비서 교시 및 해설서 등을 꼼꼼히 살피는 노력이 추가되어야 한다.

요컨대 북한법을 잘 보려면 해당법에 대한 본격적인 해석에 앞서서 첫째, 해당법 분야의 북한사회에서의 실체와 의미를 파악하면서 남한사회와의 동질성과 이질성을 먼저 분석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해당법의 이중성과 허구성을 밝히기 위해서 그 분야의 법규정과 현실과의 괴리 및 간극의 범위를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해당법 분야와 관련된 노동당 규약과 해설서 등을 종합 분석하여 해당법외에 다른 곳에서 법규범력이 발생할 수 있는가를 확인할 때 법규해석의 완전성과 안정성이 확보될 것이다.

최근에는 북한의 국정운영이 과거와 같이 지도자의 교시와 어록에 의한 일방적인 운영에서 벗어나 상당수 법제화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법 해석의 오류에 빠질 염려가 다소 줄어든 점은 다행이라 하겠다.



북한법률연구회
법률연구회
법률연구회

북한법률연구회
북한법률연구회

북한법률연구회
북한법률연구회

북한법률연구회
북한법률연구회

북한법률연구회
북한법률연구회

북한법률연구회
북한법률연구회

북한법률연구회
북한법률연구회

V. 맺음말 : 북한법의 미래



V [맺음말 : 북한법의 미래]

북한을 아는 방법으로는 방문과 접촉, 북한의 선전과 광고, 각종 징후분석 등이 있겠지만, 북한법제 분석을 통하여 북한사회를 이해할 경우 보다 체계적이고 균형 있는 접근이 될 것이다.

1990년대부터 진행 중인 북한의 헌법개정 및 법제 정비사업은 기본적으로 중국의 헌법경제조항과 법제개혁을 추종하고 있다. 다만 그 방향과 속도가 매우 느려서 인치(人治)적 통치구조에서 법치(法治)적 통치구조로 과감히 전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추측컨대 대외개방과 경제발전의 법제화가 김정일체제 수호라는 절대목표를 전제로 하고 있지만 중국의 사례를 감안할 때 분야별 제도화 수준에 있어서 어떠한 형태로든 큰 진전이 기대된다.

아직은 북한사회에서 ‘법의 지배’가 형식적 법치주의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지만,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엄연한 사회운영시스템으로서 법이 작동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북한법의 규범력 확보과정은 사회전반적으로 북한사회의 제도화 수준을 한 단계 높이게 되고 교류협력과 통일의 파트너인 우리에게도 좋은 징조임이 분명하다.

이에 북한법 분석을 통해서 북한사회의 제도화 수준을 가늠하고 나아가서 남북한 교류협력의 진전을 위해 북한사회의 제도화, 즉 북한사회에서 법치주의 정착을 향도할 필요가 있다.

현 단계에서 남북한이 갑작스러운 통일을 달성한다면 이것은 과거의 집념이나 기존 이데올로기의 승리일 뿐, 결코 통일을 미래지향적으로 맞이하는 우리의 바람직한 모습은 아닐 것이다.

이 경우 어느 누구도 정치·경제·사회·문화·국방 등의 모든 측면에서 원하지 않는 ‘혼란스런 통일한국상’이 초래되어

통일을 지향해 온 그동안의 충분한 분단과정은 아무런 의미 없는 세월로 간주되어 단순한 역사의 상흔으로만 남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의 분단상황을 단순히 통일 이전의 단계로 간주하고 빨리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에만 사로잡혀서는 안되며, 다양한 측면에서 철저한 사전준비가 더 더욱 요구되는 시점이 지금의 상황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북한법을 분석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것으로 북한 현행법의 파악을 통하여 북한사회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가 향후 통일시기를 전후한 남북한간의 법문화 및 법체제의 갈등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법제적 차원의 통일준비작업을 하는 것에 해당된다.🌐

참고문헌

朴相哲, “韓國人の 法意識”, 『21世紀の 日韓民事法制』(日本
東京: 信山社), 2005.

박상철, 『정치법학의 임무』(서울: 도서출판 지정), 1999.

박상철, 『북한의 선거법제』(서울: 한국법제연구원), 1996.

박상철, 『북한법률용어의 분석(형사법편)』(서울: 한국법제
연구원), 1996.

박상철, 『북한법률용어의 분석(헌법편)』(서울: 한국법제
연구원), 1995.

박상철, 『북한의 문화재보호관계법제』(서울: 한국법제
연구원), 1995.

박상철, 『북한의 환경보호관계법제』(서울: 한국법제연구원),
1995.

박상철, 『북한의 외국인투자법제』(서울: 한국법제연구원),
1994.

박상철, 『북한법제 관련 문헌목록집』(서울: 한국법제연구원),
1993.

박상철(역), 콜라코프스키의 맑시즘(I), (서울: 도서출판 한겨레)
1989 : Leszek Kolakowski, Main Currents Of
Marxism (Oxford: Oxford Univ. Press, 1978).

박정원, 『북한 김정일체제의 법제정비 현황과 전망』(서울:
한국법제연구원), 2002.

김영수, 『한국헌법사』(서울: 학문사), 2000.

장명봉(편), 『최근 북한법령집』(서울: 북한법연구회), 2005.

『민사법사전』, (평양: 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리론 : 법학2』, (평양: 조선
로동당출판사), 1996.

조선말대사전 (1)(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김억락 외, 『국가와 법이론』(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91.

심형일, 『주체의 법리론』(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7.

홍국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제정사』(평양: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1986.

서창섭, 『법건설 경험』(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4.

